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진정 처리기한 명시 및 피해자 조사요구권 신설〉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42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진정 처리기한 명시	3
2. 피해자 조사요구권 신설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훈기 · 김 윤 · 박지원 · 김 현 · 최민희 · 이광희
박용갑 · 박선원 · 백승아 · 김기표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6. 2. 25.

3. 회 부 일 : 2026. 2. 26.

※ 의안번호 : 1704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그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진정처리 기한이 내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사의 처리기한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정을 처리하도록 그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진정한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진정 처리기한 명시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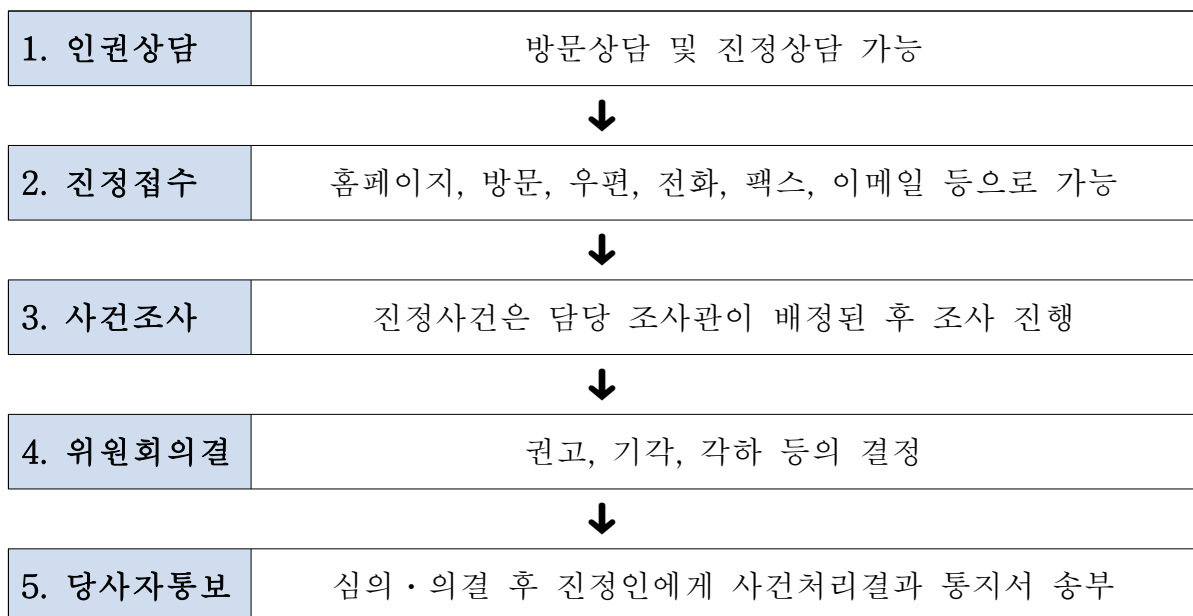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2(진정의 처리기한 등)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진정인에게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1)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지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방자치단체·학교·공직유관단체로부터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거나 법인·단체·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받아 담당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한 후 의결을 거쳐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서를 송부하고 있음.

[표-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절차



한편, 진정의 처리기한에 관해서는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위원회 규칙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조사구제규칙”이라 함) 제4조²⁾에서는 진정 접수일부터 3개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조사구제규칙 제4조(사건처리기한) ①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에게 면담 또는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그 기록을 남

월(9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 이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처리 평균 소요일수를 살펴보면, 2021년 142.6일, 2022년 142.5일, 2023년 136.6일, 2024년 111.0일, 2025년 118.8일로서 조사구제규칙상 원칙적 진정 처리기한인 90일보다 상당히 지연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표-3]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2021년 ~ 2025년)

(단위 : 건, 일)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종결건수(A)	9,254	10,302	12,119	10,191	10,025
종결된 처리건수 중 3개월 이내 처리된 건수(B)	4,870	4,900	5,899	5,634	5,350
B/A(%)	52.6	47.6	48.7	55.3	53.4
평균 소요일수	142.6	142.5	136.6	111.0	118.8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지연문제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처리를 명시한 조사구제규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속하게 인권침해를 구제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구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³⁾ 국회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서도 진정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긴 경우 문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서를 송부한 뒤에도 필요한 경우 진정인에게 추가로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의 적시성, 적절성, 효과성 확보1: 조사·구제 혁신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8, p.98

[표-4] 국회운영위원회 진정 신속 처리 요구 현황

구 분	내 용
2021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진정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인용률 제고, 진정사건에 대한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2022년도 예산안 부대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한 진정 사건 조사를 위해 정부와 협약하여 조사관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22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진정사건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고 처리 지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에 대한 안내가 진정인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2024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진정사건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하고 처리 지연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에게 그 사유가 통지되도록 할 것

개정안은 진정 처리기한을 90일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20일(30일 연장) 이내 진정을 처리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진정 처리기한 규정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진정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여 진정인에 대한 구제의 적시성 확보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⁴⁾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

4) 개정안 제30조의2제4항은 진정에 대한 처리 경과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사구제규칙 제40조에서 사건처리결과와 진정인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조사구제규칙 제40조(사건처리결과와 통지) ① 소위원회 등이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되, 제39조제1항에 따라 결정문이 작성된 경우에는 결정문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진술서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피진정인을 조사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진정인에게도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등이 법 제39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진정의 당사자에게 기각통지서 또는 기각결정문 정본 및 권고결정문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건처리결과와 통지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두로 통보한 후 추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1.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2. 진정을 기각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3. 법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40일 이내

4.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함과 동시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권고 내지 의견표명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40일 이내

권익위원회의 경우 부패행위 등의 신고의 처리기한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⁵⁾

[표-5] 처리기한 관련 규정 비교

구 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현 행	개정안	
근거규정	위원회 규칙	법률	법률
대상사건	진정	진정	부패사건 등 신고
처리기한	3개월	90일	60일
처리내용	각하, 조사중지, 기각, 권고, 의견표명, 수사의뢰, 이송 등		신고접수 사실확인 후 조사기관(감사원, 수사기관 등) 이첩·송부·종결처리
처리기한 연장	연장 가능 (연장일수 제한 없음)	연장 가능 (연장일수 최대 30일)	연장 가능 (연장일수 최대 30일)
처리기한 연장절차	진정인에게 연장사유 설명	진정인에게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통지	- (법률상 규정 없음)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⑧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피해자 조사요구권 신설

개정안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조사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표-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6조의2(피해자의 조사요구권) ① 위원회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해당 진정에 관하여 피해자를 충분히 조사하여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에 대한 조사로 진정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동일한 진정에 대해서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구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조사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구한 피해자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은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요구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및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사구제규칙 제16조제1항은 진정내용, 피해자의 의사 등이 불명확할 경우 신속히 진정인 및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실무상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조사담당자가 피해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상적 조사 방법인 전화조사, 서면조사 또는 대면조사 등 진정인 및 피진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개정안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조사 과정에 있어서 피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조사구제규칙 제16조(진정인 및 피해자의 조사) ① 조사담당자는 진정내용, 피해자의 의사 등이 불명확할 경우 신속히 진정인 및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지체 없이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진정인을 조사할 경우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나 참고인 등이 있는지 문의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조기에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진정인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의 조사담당자는 진정인을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고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 등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이나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여 조사·구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피해자의 의사가 구제조치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재량 사항이기는 하나 현행 법령에 피해자에 대한 조사 절차가 이미 규정되어 있고, 실무상으로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